

5512.02 사이버 괴롭힘

정책 준칙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도 예의바른 교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군내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생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하고자하는 학교의 역량을 모두 저해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군에서 보유, 운영, 감독하는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군내 학생들의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장 또는 지명을 받은 자는 사이버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법률집행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의

"사이버 괴롭힘"은 이메일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채팅방, 인터넷 게시물, 명예를 훼손하는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전자 정보 및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1. 개인이나 집단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겁을 주는 행위 또는
2. 개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손상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3.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군에서 보유, 운영, 감독하는 기술장비"는 학군 및/또는 학군내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임대, 운영, 통제, 감독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UPN과 같은

전자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기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이용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신고 절차 및 조사

사이버 괴롭힘을 받았거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교 직원 또는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받았거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사람은 즉시 교장이나 지명을 받은 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지명을 받은 자는 그러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모든 신고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조사 결과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장 또는 임명을 받은 자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만일 사이버 괴롭힘이 학군내 학생에 의해 교내 및 또는 학군내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학군 학생에 의해 학군 외부의 기술장비를 이용하여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교장 또는 임명을 받은 자는 조사 결과를 지역 법률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당국은 스쿨 버스나 N.J.A.C. 6A:16-7.6에 따라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등과 같이 교외에서 일어난 괴롭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 권한은 N.J.S.A. 18A:25-2 및 18A:37-2에 따라 해당 학생의 신체 안전이나 정신 건강 등 안전, 보안, 건강 또는 다른 학생이나 직원, 교내 안전 보안 및 안녕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권한은 학교 운영을 위한 합당한 규율 준수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방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정책 과 규정 5600, N.J.A.C. 6A:16-7.1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N.J.A.C. 6A:16-7.2, 6A:16-7.3, 또는 6A:16-7.5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혐의에 관한 모든 조사는 규정 5512에 명시된바에 따라 교장이나 지명을 받은 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정당할 절차를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징계와 처벌

일부 사이버 괴롭힘 행위는 학군에서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학급이나 학교, 학군이나 법 집행 수준에서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괴롭힘이나 대규모 사이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조치로는 학생규율 N.J.S.A. 18A:37-1에 따른 긍정적인 품행 중재부터 정학이나 퇴학까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책

TENAFLY
교육위원회

학군의 기술장비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은 정책 2361 - 컴퓨터 네트워크/컴퓨터 및 자원의 합당한 사용법을 위반하며 정책 및 규정 2361의 징계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이버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중재 방안은 교장이나 임명을 받은 자가 결정한 적절한 전략 및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복 또는 앙갚음 금지

학군은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을 금지합니다. 보복이나 앙갚음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교정 조치는 행위 성격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례법과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학군 정책과 절차에 따라 교장이나 임명을 받은 자가 결정합니다.

무고에 대한 처벌

허위로 타인을 사이버 괴롭힘 행위로 고발한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적절한 교정 조치의 범위는 학생 규율 N.J.S.A. 18A:37-1에 따른 긍정적인 품행 중재부터 정학이나 퇴학까지를 포함합니다.

타인을 사이버 괴롭힘 행위로 허위로 고발한 학교 직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조치는 학군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됩니다.

정책 공개

본 정책은 연례적으로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배포됩니다.

채택일: 2011년 5월 3일